

『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·보완하고, 종량제 봉투의 디자인을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의 제작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의3)
-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에
기준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일원화(안 제10조제1항제4호, 별표8 삭제)
- 종량제봉투의 색상 및 규격 변경(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, 안 별표5)
 - (현행) 종류에 따라 다른 색깔 → (개정) 반투명으로 통일
 - 100리터 삭제, 75리터 신설
- 종량제봉투의 제작사항을 환경부 표준규격에 맞게 개정
(안 제15조제2항 및 제5항, 별표3 삭제)
-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 기준 수정 및 품목 세분화(안 별표1)
 - (현행) 77종 → (개정) 4종 삭제 / 3종 신설 / 12종 기준 수정
- 플라스틱류 PET병 배출요령 변경(안 별표2)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대형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·보완하고, 종량제 디자인을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의 제작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, 상위법 신설에 따른 안전수칙 등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 현실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임.
 -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12종 품목에 대한 평균 수수료가 76%정도 인상되나, 대형폐기물 발생량은 10년간 133% 이상이 증가하는 등 처리비용 현실화는 불가피하므로 생활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활쓰레기 감량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